|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세무관련전문서비스 관리감독방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년제13호  국무원 “방관복”개혁배치 요구를 철저히 관철시켜 실현해 가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를 규범화하며, 국가세수이익과 납세자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및 그 실시세칙과 국무원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세무 관련 전문서비스관리감독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발표하며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5월 5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 관리감독방법(시범시행)  제1조 국무원의 간정방권 (정부와 기업의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 방관결합(행정절차 간소화 및 시장관리감독 강화), 서비스 최적화 업무요구를 철저히 실현해 가고, 국가세수이익을 유지하며, 납세자의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를 규범화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과 국무원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서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  제3조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라 함은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위탁을 받아 전문지식과 기능을 이용하여, 세무관련사항에 관하여 위탁인에게 제공하는 세무대리 등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4조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라 함은 세무사사무소와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대리기장기구, 세무대리회사, 세무•재무관련컨설팅회사 등의 기구를 의미한다.  제5조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기구는 아래에 열거한 세무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5.1 납세신고대리.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집계와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납세자 및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신하여 납세신고준비와 납세신고서, 세금공제보고서 및 관련문건서명을 진행한다.  5.2 일반세무 컨설팅.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일상적인 세무처리사항에 대한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5.3 전문세무 컨설팅.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세무관련 사항에 대한장기적인 전문세무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5.4 세수계획.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영과 투자활동에 대해 세수법률법규 및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납세계획 및 납세방안을 제공한다.  5.5 세무관련검증. 법률법규 및 법률법규에서 제정한 관련규정요구에 따라, 세무관련사항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감정과 증명을 발급한다.  5.6 납세상황심사.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위탁을 받아, 법에 의거 기업납세상황에 대한심사를 진행하고, 전문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5.7 기타세무사항대리. 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위탁을 받아, 장부개설기장, 세금계산서 수령, 감면∙세금환급신청 등의 세무사항을 대신 처리한다.  5.8 기타세무관련 서비스. 전관 제3항~제6항까지의 세무 관련 업무는 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자질을 갖춘 세무 관련전문서비스기구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관련문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서명하고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 세무 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세수법률법규 및 관련 세수규정을 준수하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업무규범을 따라야 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위탁인에게 발급하는 각종 세무관련 보고서와 문서는 쌍방이 검토한 후 비치하고 그 중, 세수법률법규 및 국가세무총국이 제출을 규정한 경우에는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세무기관은 세무사사무소가 행정등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관리하여야 한다.행정등기를 거치지 않고“세무사사무소”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세무사사무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  세무사사무소 동업인 또는 투자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맡으며,세무사의비율은 50% 이상 이여야 하며, 국가세무총국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세무사사무소는 상사등기를 처리한 후, 성(省)세무기관에서 행정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성(省)세무기관이 행정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세무사사무소행정등기증서>를 교부하며 또한 관련자료를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고, 성(省)세무사업종협회에 사본을 전달한다. 행정등기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행정등기가 수리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세무사사무소 행정등기과정(규범)은 별도로 제정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사회계사와 법률사무소가법에 의거회계사사무소개업증서 또는 변호사사무소 개업허가증을 취득한 것은 행정등기로 간주한다.  제8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실명제 관리를 진행한다.  세무기관은 금세3기 응용시스템을 토대로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금세 3기 핵심 징수관리시스템에서 수집한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의 기본정보,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제출한 인원정보와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거친 실명 세무처리(자가세무처리인원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대리세무처리인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분류관리를 구축하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과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관계를 확립하며, 납세자 자가세무처리인원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대리세금처리인원을 구분하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서비스에 종사하는 납세자(원천징수의무자)의 전면적으로 변동되는 실명정보관리를 실현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는 세무기관에 기구와 세무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의 성명, 신분증번호, 전문자격증서번호, 업무위탁계약서 등 실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기관은 업무정보수집제도를 구축하여, 현존하는 정보플랫폼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분류 별로 수집하고, 내부 정보공유를 강화하며, 분석이용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는 연도보고 형식으로 세무기관에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전체적인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변호사 사무소가 전문적인 세무컨설팅, 세수계획, 세무관련 감정, 납세상황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업무를 완료한 익월에 세무기관에 단독으로 관련업무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업무 집행상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신고 및 고발상황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신용평가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상황에 대해 신용평가를 진행하며,그 세무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신용기록을 진행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의 납세신용을 기초로 위탁인의 납세신용, 납세자평가, 세무기관평가, 실명세무처리, 업무규모, 서비스 품질, 업무집행품질검사, 업무정보품질 등 상황과 결합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신용평가지표체계를 구축하고, 신용등급평가 또는 신용기록을 진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12조 세무기관은 세무사업종협회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하고, 기타 관련 업종협회와 업무연계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업종협회에 위탁하여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업무집행 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전국세무사업종협회는 세무관련 전문서비스 업무규범(준칙 및 규칙)이 제정되도록 책임지고, 국가세무총국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13조 세무기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전자세무총국과 세금처리서비스 장소에 관리감독에 포함되는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명단 및 그 신용상황을 공고하여야 하며, 동시에 행정등기를 거치지 않은 세무사사무소 명단도 공고한다.  제14조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 서비스 인원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 내 개정 또는 상담 예약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넘겨 개정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신용등급을 내리거나 또는 신용기록에 포함하고, 대리하는 세무관련업무(잠정중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 수리를 잠정 중단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세무기관이 세무관련 서비스 저신용 명단에 포함하여, 공고를 하거나 사회신용플랫폼(사이트)에서 푸시(PUSH)창을 띄우고, 그 대리하는 세무관련 업무는 세무기관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14.1 세무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며 행정등기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  14.2 세무처리실명제 요구에 따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와 세무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의 실명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14.3 업무정보 수집요구에 따라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관련상황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4.4 제출한 정보가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경우  14.5 세무기관의 검사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14.6 기타 세무기관 관리감독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세무사사무소가전관 제1항의 상황과 기간을 넘겨 개정하지 않는 경우, 성(省)세무기관은 공상부처에서 그 영업집조를 말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 서비스 인원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중점 관리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신용등급을 내리거나 또는 신용기록에 포함하며, 대리하는 세무관련업무(잠정중단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음)수리를 잠정 중단하고, 상황이 비교적 엄중한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서비스 저신용 명단에 포함하여, 공고를 하거나 사회신용플랫폼(사이트)에서 푸시(PUSH)창을 띄우고, 그 대리하는 세무관련 업무는 세무기관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그 중, 성(省)세무기관에서 <세무사사무소 행정등기증서> 무효를 발표한 세무사사무소에 대해서는 공상부처에 그 영업집조 말소를 요청하고, 전국세무사업종협회에 세무사직업자격증서등기취소 및 그 직업자격증서를 회수하여 사회에 공고하고, 기타 세무관련 서비스기구 및 그 세무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원은 세무기관이 기타업종 주관부처 및 업종협회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한다.  15.1 세수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위탁인이 세금을 미납 또는 과소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져<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  15.2 세무관련 전문서비스 관련업무규범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허위의견을 발급하는 경우  15.3 은닉, 사기, 뇌물수수, 공모, 리베이트 등 정당하는 않은 경쟁수단을 취해 업무를 맡아 위탁인 또는 타인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15.4 서비스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  15.5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의 명의로 납세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  15.6 세무기관 업무직원에게 뇌물을 주거나 위탁인이 뇌물을 수수하도록 사주 및 유도하는 경우  15.7 기타세수법률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제16조 세무기관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화 플랫폼을 토대로 신용등급이 높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에게 대량의 납세신고 및 정보제출 등 업무를 전개하는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이 필요로 하는 세무관련 전문서비스는 정부조달방식을 통해 조달하여야 한다.  세무기관과 세무인원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의 경영활동에 참여하거나 불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  제18조세무사업종협회는 세무사업종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서비스기능 제고 및 훈련서비스를 강화하며, 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업그레이드와 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세무사사무소는 자발적으로 세무사업종협회에 가입한다.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대리기장기구는 각자 업종협회에 가입하고 업종자율 관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세무사업종협회 세무대리인지부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타 어떠한 업종협회에도 가입하지 않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자발적으로 세무사업종협회 세무대리인지부에 가입하도록 장려한다.  제19조 각성(省)세무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실제상황과 연계하여, 세무관련 전문서비스기구가 세무관련 전문서비스에 종사하는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涉税专业服务监管办法(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13号  　　为深入贯彻落实国务院“放管服”改革部署要求，规范涉税专业服务，维护国家税收利益和纳税人合法权益，依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和国务院有关决定，国家税务总局制定了《涉税专业服务监管办法（试行）》，现予以发布，自2017年9月1日起施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7年5月5日  涉税专业服务监管办法（试行）  　　第一条 为贯彻落实国务院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工作要求，维护国家税收利益，保护纳税人合法权益，规范涉税专业服务，依据《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和国务院有关决定，制定本办法。  　　第二条 税务机关对涉税专业服务机构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涉税专业服务进行监管。  　　第三条 涉税专业服务是指涉税专业服务机构接受委托，利用专业知识和技能，就涉税事项向委托人提供的税务代理等服务。  　　第四条 涉税专业服务机构是指税务师事务所和从事涉税专业服务的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代理记账机构、税务代理公司、财税类咨询公司等机构。  　　第五条 涉税专业服务机构可以从事下列涉税业务：  　　（一）纳税申报代理。对纳税人、扣缴义务人提供的资料进行归集和专业判断，代理纳税人、扣缴义务人进行纳税申报准备和签署纳税申报表、扣缴税款报告表以及相关文件。  　　（二）一般税务咨询。对纳税人、扣缴义务人的日常办税事项提供税务咨询服务。  　　（三）专业税务顾问。对纳税人、扣缴义务人的涉税事项提供长期的专业税务顾问服务。  　　（四）税收策划。对纳税人、扣缴义务人的经营和投资活动提供符合税收法律法规及相关规定的纳税计划、纳税方案。  　　（五）涉税鉴证。按照法律、法规以及依据法律、法规制定的相关规定要求，对涉税事项真实性和合法性出具鉴定和证明。  　　（六）纳税情况审查。接受行政机关、司法机关委托，依法对企业纳税情况进行审查，作出专业结论。  　　（七）其他税务事项代理。接受纳税人、扣缴义务人的委托，代理建账记账、发票领用、减免退税申请等税务事项。  　　（八）其他涉税服务。  　　前款第三项至第六项涉税业务，应当由具有税务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资质的涉税专业服务机构从事，相关文书应由税务师、注册会计师、律师签字，并承担相应的责任。  　　第六条 涉税专业服务机构从事涉税业务，应当遵守税收法律、法规及相关税收规定，遵循涉税专业服务业务规范。  　　涉税专业服务机构为委托人出具的各类涉税报告和文书，由双方留存备查，其中，税收法律、法规及国家税务总局规定报送的，应当向税务机关报送。  　　第七条 税务机关应当对税务师事务所实施行政登记管理。未经行政登记不得使用“税务师事务所”名称，不能享有税务师事务所的合法权益。  　　税务师事务所合伙人或者股东由税务师、注册会计师、律师担任，税务师占比应高于百分之五十，国家税务总局另有规定的除外。  　　税务师事务所办理商事登记后，应当向省税务机关办理行政登记。省税务机关准予行政登记的，颁发《税务师事务所行政登记证书》，并将相关资料报送国家税务总局，抄送省税务师行业协会。不予行政登记的，书面通知申请人，说明不予行政登记的理由。  　　税务师事务所行政登记流程（规范）另行制定。  　　从事涉税专业服务的会计师事务所和律师事务所，依法取得会计师事务所执业证书或律师事务所执业许可证，视同行政登记。  　　第八条 税务机关对涉税专业服务机构及其从事涉税服务人员进行实名制管理。  　　税务机关依托金税三期应用系统，建立涉税专业服务管理信息库。综合运用从金税三期核心征管系统采集的涉税专业服务机构的基本信息、涉税专业服务机构报送的人员信息和经纳税人（扣缴义务人）确认的实名办税（自有办税人员和涉税专业服务机构代理办税人员）信息，建立对涉税专业服务机构及其从事涉税服务人员的分类管理，确立涉税专业服务机构及其从事涉税服务人员与纳税人（扣缴义务人）的代理关系，区分纳税人自有办税人员和涉税专业服务机构代理办税人员，实现对涉税专业服务机构及其从事涉税服务人员和纳税人（扣缴义务人）的全面动态实名信息管理。  　　涉税专业服务机构应当向税务机关提供机构和从事涉税服务人员的姓名、身份证号、专业资格证书编号、业务委托协议等实名信息。  　　第九条 税务机关应当建立业务信息采集制度，利用现有的信息化平台分类采集业务信息，加强内部信息共享，提高分析利用水平。  　　涉税专业服务机构应当以年度报告形式，向税务机关报送从事涉税专业服务的总体情况。  　　税务师事务所、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从事专业税务顾问、税收策划、涉税鉴证、纳税情况审查业务，应当在完成业务的次月向税务机关单独报送相关业务信息。  　　第十条 税务机关对涉税专业服务机构从事涉税专业服务的执业情况进行检查，根据举报、投诉情况进行调查。  　　第十一条 税务机关应当建立信用评价管理制度，对涉税专业服务机构从事涉税专业服务情况进行信用评价，对其从事涉税服务人员进行信用记录。  　　税务机关应以涉税专业服务机构的纳税信用为基础，结合委托人纳税信用、纳税人评价、税务机关评价、实名办税、业务规模、服务质量、执业质量检查、业务信息质量等情况，建立科学合理的信用评价指标体系，进行信用等级评价或信用记录，具体办法另行制定。  　　第十二条 税务机关应当加强对税务师行业协会的监督指导，与其他相关行业协会建立工作联系制度。  　　税务机关可以委托行业协会对涉税专业服务机构从事涉税专业服务的执业质量进行评价。  　　全国税务师行业协会负责拟制涉税专业服务业务规范(准则、规则)，报国家税务总局批准后施行。  　　第十三条 税务机关应当在门户网站、电子税务局和办税服务场所公告纳入监管的涉税专业服务机构名单及其信用情况，同时公告未经行政登记的税务师事务所名单。  　　第十四条 涉税专业服务机构及其涉税服务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税务机关责令限期改正或予以约谈；逾期不改正的，由税务机关降低信用等级或纳入信用记录，暂停受理所代理的涉税业务（暂停时间不超过六个月）；情节严重的，由税务机关纳入涉税服务失信名录,予以公告并向社会信用平台推送，其所代理的涉税业务，税务机关不予受理：  　　（一）使用税务师事务所名称未办理行政登记的；  　　（二）未按照办税实名制要求提供涉税专业服务机构和从事涉税服务人员实名信息的；  　　（三）未按照业务信息采集要求报送从事涉税专业服务有关情况的；  　　（四）报送信息与实际不符的；  　　（五）拒不配合税务机关检查、调查的；  　　（六）其他违反税务机关监管规定的行为。  　　税务师事务所有前款第一项情形且逾期不改正的，省税务机关应当提请工商部门吊销其营业执照。  　　第十五条 涉税专业服务机构及其涉税服务人员有下列情形之一的，由税务机关列为重点监管对象,降低信用等级或纳入信用记录，暂停受理所代理的涉税业务（暂停时间不超过六个月）；情节较重的，由税务机关纳入涉税服务失信名录，予以公告并向社会信用平台推送，其所代理的涉税业务，税务机关不予受理；情节严重的，其中，税务师事务所由省税务机关宣布《税务师事务所行政登记证书》无效，提请工商部门吊销其营业执照，提请全国税务师行业协会取消税务师职业资格证书登记、收回其职业资格证书并向社会公告，其他涉税服务机构及其从事涉税服务人员由税务机关提请其他行业主管部门及行业协会予以相应处理：  　　（一）违反税收法律、行政法规，造成委托人未缴或者少缴税款，按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及其实施细则相关规定被处罚的；  　　（二）未按涉税专业服务相关业务规范执业，出具虚假意见的；  　　（三）采取隐瞒、欺诈、贿赂、串通、回扣等不正当竞争手段承揽业务，损害委托人或他人利益的；  　　（四）利用服务之便，谋取不正当利益的；  　　（五）以税务机关和税务人员的名义敲诈纳税人、扣缴义务人的；  　　（六）向税务机关工作人员行贿或者指使、诱导委托人行贿的；  　　（七）其他违反税收法律法规的行为。  　　第十六条 税务机关应当为涉税专业服务机构提供便捷的服务，依托信息化平台为信用等级高的涉税专业服务机构开展批量纳税申报、信息报送等业务提供便利化服务。  　　第十七条 税务机关所需的涉税专业服务，应当通过政府采购方式购买。  　　税务机关和税务人员不得参与或违规干预涉税专业服务机构经营活动。  　　第十八条 税务师行业协会应当加强税务师行业自律管理，提高服务能力、强化培训服务，促进转型升级和行业健康发展。  　　税务师事务所自愿加入税务师行业协会。从事涉税专业服务的会计师事务所、律师事务所、代理记账机构除加入各自行业协会接受行业自律管理外，可自愿加入税务师行业协会税务代理人分会；鼓励其他没有加入任何行业协会的涉税专业服务机构自愿加入税务师行业协会税务代理人分会。  　　第十九条 各省税务机关依据本办法，结合本地实际，制定涉税专业服务机构从事涉税专业服务的具体实施办法。  　　第二十条 本办法自2017年9月1日起施行。 |